

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26-46호

남강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

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165-10번지 일원 “남강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”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하고, 같은 법 제23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

2026년 5월 6일

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가. 종 류 : 가로주택정비사업

나. 명 칭 : 남강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

2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

가. 위 치 : 수영구 광안동 165-10번지 일원

나. 면 적 : 1,324.6㎡

3.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

가. 착수 예정일 : 2027. 4.

나. 준공 예정일 : 2030. 8.

4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

가. 조합의 명칭 : 남강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

나. 사무소 소재지 :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538, 302호(광안동)

5. 변경사항 : 조합원, 조합임원, 사무소 소재지 및 조합정관 변경 등